1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검사항목 변경 및 추가

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(☎ 063-290-5342)

▣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검사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
○ 2017년까지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은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석면, 오존 등이었으나, 2018년부터는 석면, 오존이 권고기준 항목에서 없어지고 **미세먼지, 곰팡이 등이 추가**되어 **2018년 권고기준 항목은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미세먼지(PM2.5), 곰팡이** 등으로 권고기준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음.

○ **미세먼지, 곰팡이** 등은 다중이용시설중 **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등에 적용**됨.

※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

오염물질 항목 / 다중이용시설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Bq/㎥)	총휘발성유기화합물 (㎍/㎥)	미세먼지 (PM-2.5) (㎍/㎥)	곰팡이 (CFU/㎥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0.05 이하	148 이하	500 이하	-	-
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		400 이하	70 이하	500 이하
다. 실내주차장	0.30 이하		1,000 이하	-	-

▣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중 "라돈"이 추가되었습니다.

○ 2017년까지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**폼알데하이드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틸렌** 등이었으나, 2018년부터 기존항목에 "**라돈**"이 추가되었음.

※ **2018년 검사항목 및 기준** : 폼알데하이드 210㎍/㎥ 이하, 벤젠 30㎍/㎥ 이하, 톨루엔 1,000㎍/㎥ 이하, 에틸벤젠 360㎍/㎥ 이하, 자일렌 700㎍/㎥ 이하, 스티렌 300㎍/㎥ 이하, 라돈 200Bq/㎥ 이하

▣ 시 행 일 : 2018년 1월 1일